

제 680 호
1978. 5. 3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정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중랑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규칙

제 1748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3
제 1749 호 :	서울특별시구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13
제 1750 호 :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16
제 1751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18
제 1752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소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19
제 1753 호 :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사무분장규칙	20
제 1754 호 :	서울특별시전설사업소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21
제 1755 호 :	서울특별시전설자재사업소사무분장규칙	22
제 1756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23
제 1757 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 증개정규칙	2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부 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운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48 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중 「통계담당관」을 「통계담당관」, 「전산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중 「담당관은 서기관으로」를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제 7조 제 1항 중 「통계기준지, 통계조사지와 자료처리지」를 「통계기준지와 통계조사지」로 하고 동조 제 2항 중 제 3호를 삭제한다.

제 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조의 2 (전산담당관) ① 전산담당관 및 제 21조, 제 21조의 2, 제 21조의 3, 제 22조, 제 23조 및 제 23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1조의 4 밑에 전산 1계와 전산 2계를 두고, 제 21조 (회계 1과) ① 회계 1과에 제약 1계, 제약 2계와 회계심사계를 두고, 제 21조 (회계 1과) ② 회계 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별 전산 처리 및 부대사무의 업무는 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1. 전산 1계

가. 전산화 중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다. 전자계산설의 운영 관리

라. 전산처리 및 부대사무

마.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전산 2계

가. 전자계산기 운영기술의 연구
개발

나. 전산화 타당성 조사 및
업무개발

다. 전산처리 및 부대사무

제 11조 중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공보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담당관 1인을 두고,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여 담당관 밑에 일정적 지방공무원인 문화재요원을 둔다.

제 21조, 제 21조의 2, 제 21조의 3,

제 22조, 제 23조 및 제 23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1조의 4 밑에 전산 1계와 전산 2계를 두고, 이 신설한다.

제 21조 (회계 1과) ① 회계 1과에 제약 1계, 제약 2계와 회계심사계를 두고, 제 21조 (회계 1과) ② 회계 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업회계로 처리되는 소관국에 관한 사항은

26-4 제 660호

지

보 1978. 5. 31

제의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 조의 규정된 출납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 1계

가. 공사도급계약

나. 용역계약

다.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라.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계약 2계

가. 물품구매계약

나. 제조, 운반, 수선 및 대차 계약

다. 조달물품구매

라. 출입업자 등록

마. 물품관리의 종합조정 및 본 청 물품의 출납보관

3. 회계심사계

가. 회계제도의 연구

나. 회계예규의 정비

다. 회계문서의 파목조사 및 계 수검산

라.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

마. 물품경수 입회와 공사검사 입회

제 21 조의 2 (회계 2과) ①회계 2과에 관리계, 지출 1계와 지출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회계 2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회계적 공무원의 임면 및 재정보증제도의 운영

나. 저축에 관한 사항

다. 국채 소화에 관한 사항

라. 수입증지의 수불

마. 새마을금고 인가에 관한 사항

바.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출 1계

가. 시비 지출의 총괄

나. 본청 소관 시비의 지출

다. 시비 자금의 관리

라. 시비 지출 증빙서의 보관

마. 원천징수 불입

3. 지출 2계

가. 시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나. 예산증명서류의 검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

<p>권의 출납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시금고의 감독 마. 국비지출의 총괄 <p>제 21 조의 3 (판재과) ①판재과에 재산관리계, 재산처분계와 국유재산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판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업회계로 처리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관리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유재산의 총괄관리 및 조정 나. 공유재산의 취득, 차입(도시 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다. 시유창고의 관리 라. 공유재산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처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종재산의 대부 및 처분 나. 임종재산처분에 따른 지적 정리 및 등기이전 다.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 	<p>3. 국유재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의 총괄 나.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다. 관리 이관된 국유재산 처분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이전 <p>제 21 조의 4 (영선과) ①영선과에 공사 1개, 공사 2개와 설비계를 두고 공사 1계장과 공사 2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설비계장은 지방기술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p> <p>②영선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속 시유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수리공사의 계획, 설계와 시공감독 나.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사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수건축물 및 특별사항의 시공감독 및 보수 3. 설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유건축물 및 특수건물에
---	---

보 1978. 5. 31

<p>대한 전기·수도·위생·냉난방 기타 부역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및 보수</p> <p>나. 시 유건축물 대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감독</p> <p>제 22 조 (세무 1 과) ① 세무 1 과에 세 정계, 과정 1 계, 과정 2 계와 세입 총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세무 1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다만, 과정 1 계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을, 과정 2 계는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도축세, 마권세 및 사업소세의 과정에 관한 사항을 관掌한다.</p> <p>1. 세 정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세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세정운영의 조정통제 라. 지방세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의 정비 및 해석 마. 구·출장소 시달문서의 사전 심사 바. 세무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사. 구·출장소 세무행정의 전반적 지도 아.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과정 1 계, 과정 2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세의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나. 시세 부과징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부과액 징계의 총괄 라. 구행정의 실적심사 및 분석 마. 시세 체납처분에 관한 지도 감독 <p>3. 세입총괄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세입총괄 나. 세입정수보고서의 총괄 및 세입결산 다. 시금고 및 시공금 수납은행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라. 구·출장소 세입업무의 지도감독 마. 과년도 세세정리 지도감독 바. 세외수입(특별회계 제외) 징수 결의 <p>제 22 조의 2 (세무 2 과) ① 세무 2 과에 심사 1 계, 심사 2 계와 세외수입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세무 2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다만, 심사 1 계 및 심사 2 계의 계별 재조사 청구 및 심사청구 사무의 범위는 과장이 정한다.</p> <p>1. 심사 1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조사 청구의 심의결정 나. 심사청구의 경우 진달 다. 세무판계 소송업무 라. 지방세 심사위원회 운영 마.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p>2. 심사2제</p> <p>가. 재조사청구의 심의결정 나. 심사청구의 경유전달</p> <p>3. 세외수입제</p> <p>가. 도로수익자부담금 짜정 지도 나. 세외수입의 개발 및 요율조정 통계</p> <p>다. 세외수입의 분석 라. 세외수입에 관한 법령,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안합의</p> <p>제 23 조(세무조사과) ①세무조사과에 조사 1제, 조사 2제와 평가제를 두고, 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세무조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이경우 과내 각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사 1제에서 관장하고, 조사 1제 및 조사 2제의 계별 세무조사 사무의 범위는 과장이 정한다.</p> <p>1. 조사 1제, 조사 2제</p> <p>가.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음성 및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및 추징</p> <p>다. 범칙사건의 처리 라. 세무사찰</p> <p>마. 세무조사에 관한 지도감독</p> <p>2. 평가제</p> <p>가. 토지와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사항 나. 천물의 종별설정과 수정에</p>	<p>관한 사항</p> <p>다. 부동산시가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가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상각자산과표 조사에 관한 사항 바. 무신고 이동지에 대한 처리 사항 사. 부동산 가격통지에 관한 사항</p> <p>제 23 조의 2 (지적과) ①지적과에 지적관리제, 지적 1제와 지적 2제를 두고, 지장은 지적기과 또는 지방지적 기과로 보한다.</p> <p>②지적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지적관리제</p> <p>가. 지적 담무계획의 수립 및 분석 나. 세출여산의 조정배분 요구 다. 등기축락에 관한 사항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지적 1제</p> <p>가. 지적공부의 정리보존에 관한 사항 나. 지적축량에 관한 지도감독 다. 지적상각성과표 관리</p>
---	---

26-8 제 660 호 시

보 1970. 5. 31.

<p>라. 경제 감정인 선임 마. 지적에 관한 등본 발급자 도 바. 지적 측량 검사 3. 지적 2계 가. 지적 전산화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 나. 수치지적 측량의 계획수립 및 집행 다. 측적변경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라. 측량제산프로그램 작성 마. 면적측량집중관리 제 26 조 제 1 항 중 “의무계장은 지방 의무기과로”를 “의무계장은 지방의 무기과 또는 지방보전기과로”로 한다.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환경파) ① 환경파에 환경 행정계, 수질보전계와 대기보전계를 두고 환경 행정계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수질보전계장은 지방 홍보기과로, 대기보전계장은 지방 홍보기과 또는 지방보전기과로 보한다. ② 환경파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 행정계 가. 공해 대책의 종합조정 나. 공해업무의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다. 공해 관계 위원회의 운영 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조업정지, 취소</p>	<p>마. 공해 관계 위원회 교육 바. 공해방지시설업 및 산업폐기 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 사. 국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질보전계 가. 수질, 토양오염(이하 “수질오염”이라 한다)의 방지 대책 수립 나. 수질오염조사 및 분석 다. 수질오염 측정망의 유지, 관리 라. 수질오염 발생원에 대한 지도 감독 마.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대체 등의 행정명령 바. 수질오염 물질 방지 시설의 기술적 검토 사. 기타 대기보전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대기보전계 가.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악취(이하 “대기오염”이라 한다)의 방지 대책 수립 나. 대기오염조사 및 분석 다. 대기오염 측정망의 유지, 관리 라.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지도 감독 마.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대체 등의 행정명령 바.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의 기술적 검토 사. 기타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 56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56</p>
---	---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 56 조 (도시계획 1과) ①도시계획 1과에 종합계획부, 지역계획 1계와 지역계획 2계를 두고, 제작은 지방 토목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종합계 획제작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1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계획부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지역지구단위 도시계획 수립 및 조정 다.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단지 사업운영 라. 도시계획상 필요한 제도면 제작 및 보관관리와 행정용 자료의 관리 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바. 국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계획 1계 가. 토지이용 계획수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법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시설동원자원(토지)의 조사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 2계 가. 생활환경계획수립 및 조정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생활환경관계계획(공원, 시장, 학교, 도서관, 공동묘지, 도살장, 화장장, 운동장, 유원지 등)
제 56 조의 2 (도시계획 2과) ①도시 계획 2과에 시설계획부, 가로계획 1 계와 가로계획 2계를 두고 제작은 지방토목기관으로 보한다.
②도시계획 2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계획부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유동업무설비, 전기공급 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가쓰공급설비, 방수, 방화, 방조, 방통, 사방설비, 수도, 저수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공용의 청사, 공공용지, 관광탑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계획
나. 국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가로계획 1계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중 폭 20m 이상의 간선도 로, 광장, 철도, 궤도, 삭도, 고 속철도,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시설 계획
3. 가로계획 2계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26-10 제 660 호

시

보

1978. 5. 31

<p>서설중 평 20m 이하의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동구, 하수도, 하천시설 계획</p> <p>나. 사도개설에 관한 사항</p> <p>제 60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라목을 사 목으로 하고 동조항 제 1 호에 라. 마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50세대 이상의 국민·민영 주택 사업계획의 승인</p> <p>마.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p> <p>바.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지도, 감독</p> <p>제 60 조 제 2 항 제 3 호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시영주택건설 및 택지조정에 따른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 (다만, 기관립된 시영주택단지 내의 재산은 제외한다)</p> <p>제 61 조 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주택관리과에 주택관리계와 주택 지도계를 두고, 주택관리계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주택지도계장은 지방제 63 조 제 2 항 본문중 단서를 삭제 토목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 한다.</p> <p>제 61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중 "주 택비 특별회계"를 "국민주택비 특별"</p>	<p>회계"로 하고, 동조항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주택지도체</p> <p>가. 시영주택의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공</p> <p>나. 시영주택설비의 보수 및 유 지관리</p> <p>다. 국민주택분양가격의 승인</p> <p>라. 50세대 이상의 국민·민영 주택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p> <p>마. 50세대 이상의 국민·민영 주택 사업계획승인의 협의</p> <p>제 62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다, 라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p> <p>제 62 조 제 2 항 제 2 호 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조항 제 2 호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나. 무허가건물 신발생방지계획 및 지도, 계통</p> <p>제 62 조 제 2 항 제 3 호 중 마목을 바목 으로 하고 동조항 제 3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항축도의 다목적활용 및 보급 하고 동조항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 이하고 동조항중 제 3 호를 제 4 호 로하여 동조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제 660 호

호 1978.5.31 26-11

2. 개량 1계

- 가. 주택개량 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지구의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축량, 설계시공 및 감독
- 나. 고지대 경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개량 2계

- 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 나. 재개발지구내의 지적분할 및 탁량에 관한 사항
- 다. 재개발지구내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라.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매각 절차에 관한 사항

제 68 조 제 1 항 중 "운수기획재와 교통시설"을 "운수기획재, 교통시설 1 계와 교통시설 2 계"로 하고 동조 제 2 항 중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2 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시설 1 계

- 가. 교통시설계획의 종합조정
- 나. 고속버스터미널 지도감독
- 다. 시외버스터미널 지도감독
- 라. 세마을 교통회관 지도감독
- 마. 교통시설 2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통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 2 계

- 가. 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유지 관리
- 나. 교통정보센터 및 전자강용식 교통신호 체계 설치
- 제 69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바둑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경로소의 조정
- 제 7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71 조(관광과) ①관광과에 관광전용계, 관광사업계와 관광지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관광과의 계정 분자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진흥계

- 가.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 나. 관광선진 및 국민관광 보급, 계몽
- 다. 국내 여행업선업의 허가
- 라.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
- 마. 관광안내소의 운영
- 바. 관광협회 운영의 지도 감독
- 사. 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광사업계

- 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
- 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 사업의 등록
- 다. 관광용 기자재에 관한 사항

26-12 제 660호

시

보 1978.5.31

<p>3. 광광지도계</p> <p>가. 광광사업체의 지도, 단속 나. 광광총사원의 효양지도 다. 광광총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라.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 감독</p> <p>제 74조의 2 제 2항 제 3호중 마목을 삭제한다.</p> <p>제 7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7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p> <p>제 76조의 2(하수시설 1과) ①하수시설 1과에 계획지, 시설계와 보수계를 두고 제작은 토목기과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②하수시설 1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계획지</p> <p>가. 하수도시설의 종합계획 수립 나. 내수침수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수립 다. 구·출장소 시행 하수도 시설공사의 지도, 감독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시설계</p> <p>가. 하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 감독 나.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에 대</p>	<p>한 기술업무 지도</p> <p>3. 보수계</p> <p>가. 하수도 시설의 보수, 계량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나. 하수도시설의 보수, 개량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다. 공공용지의 점용,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하수도 대장 작성 및 관리</p> <p>제 76조의 3(하수시설 2과) ①하수시설 2과에 처리계, 배수계와 설비계를 두고 처리계장과 배수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 전기기과로 보한다. ②하수시설 2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처리계</p> <p>가. 하수처리사업의 계획수립 나. 하수처리장의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업무의 지도, 감독 라.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배수계</p> <p>가. 유수지 펌프장의 계획수립 나. 유수지 펌프장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다. 유수지 펌프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라.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p>
--	---

제 660 호 시

보 1978. 5. 31. 26-13

3. 설비계

- 가.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펌프장의 기관설비공사 계획수립
- 나.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펌프장의 기관설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 다.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펌프장 기관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제 77 조 제 1항 중 "치수계와 수방계" 등 "치수 1계, 치수 2계와 수방계"로 한다.

제 77 조 제 2항 중 제 1호를 다음과 같아하고, 동조항 중 제 2호를 제 3호로 하고 동조항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수 1계

- 가. 하천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나. 직할 지방하천의 개수공사를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
- 다. 직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 라. 하천 및 풍유수면의 철용, 사용허가(예밀면허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협조 및 시공감독
- 마. 하천 대작 관리
- 바. 국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치수 2계

- 가. 준용하천의 개수공사를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
 - 나. 준용하천의 유지관리
- 종전의 제 77 조 제 2항 제 2호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거점계 및 수문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자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49 호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자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외 구사무분자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 중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 고, 동조제 2 항 중 "환경계자는 지방 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를 "환경 계자는 지방행정주사,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로 한다.

①(중구, 마포구, 용산구의 산업과에 산업계, 환경계와 녹지계를 두고, 동

26-14 제 660 호 시

보 1978.5.31

대문구, 성동구, 도봉구, 영등포구의
산업과에 상공계와 농정계를 두며
기타 구의 산업과에 상공계, 농정
계와 환경계를 둔다.

제 10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 10 조의 2(환경과) ①환경과에 환
경제 1 계와 환경제 2 계를 두고, 계
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

②환경과의 개별 분자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 과내 자
체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은 환경제 1 계에서 광장하며 개
별 분자사무는 지역별로 분담하되
그 분담지역은 광장이 청한다.

1. 환경제 1 계, 환경제 2 계

가. 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나. 공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다. 공해에 관한 재발자료의 조
사 분석

라.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조(도시정비과) ①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 도시계획계를 두고, 도
시정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도시
계획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②도시정비과에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정비계

가. 도시정비위원회 운영

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각종 일

허가

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지장을 이전 및 보상.
라. 도시재개발사업 및 특별가구
정비지구의 세부 사업 운영
마.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계

가. 도시계획에 관한 제계회선 및
건축선의 명시

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 사실증 어린이공원
의 지적교사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법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중 20m 이하의 일반도로(2
개구청이상 연결노선은 제외),
보행자 전용도로(2개구청이상
연결노선은 제외), 12m 이하의
하천, 6m 미만의 하수도, 소예시
작 단일종목의 운동장, 30㎢미
만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학
교(대학은 제외) 시내버스 정류
장등의 도시계획조사 입안 및
지적교사에 관한 사항

제 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조의 2(건축과) ①종로구, 중구
성북구, 마포구, 용산구의 건축과에
건축계와 건축지도계를 두고, 기타
구의 건축과에 건축제 1 계와 건축
제 2 계를 두며, 계장은 지방건축기
사로 보한다.

②건축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자호와 같다. 다만, 건축제 1계와
건축제 2계의 분장사무는 건축계
및 건축지도계의 사무를 구역별로
분담하되 그 분담구역은 과장이
정하여 이 경우 과내 각계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건
축제 1계에서 광장한다.

1. 건축계

- 가. 건축허가, 착공검사 및 준공
검사
- 나. 준공검사의 준공까지의 공사
감독
- 다.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위
법건축에 대한 허가취소 및
고발
- 라. 건축사 및 건축업자 치도감
독
- 마.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지도계

- 가.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 나.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 다. 축대의 안전도 검사 및 위
법축대에 관한 사항
- 라. 영선에 관한 사항
- 마. 시영주택(아파트)건축 및
보수공사
- 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 15조 중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토목과에 관리제 1계, 관리제 2계,

토목계, 가로정비계와 하수계를 두
고, 관리제 1계장, 관리제 2계장과
가로정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토
목계장과 하수계장은 지방토목기사
로 보한다.

제 15조 제 2항 제 3호중 나.다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항 제 4
호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뒷풀목의 정비

제 15조 제 2항중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수계

- 가. 하수도 및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 및 집행
- 나. 하수도 및 하천시설의 유지
관리
- 다. 비관리형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 라. 하수도 및 하천 대우의 작
성 및 관리
- 마. 침수지역 및 수방의 대책
- 바. 유수지 터프장의 운영관리
- 사. 공공용지 점용·사용 및 처
분의 협의

제 17조중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①중구·마포구·용산구의 수도제 2계
에 공무계와 보수계를 두고, 종로구

26-16 제 660호 시

보 1978.5.31

의 수도제 2과에 공무제, 보수제와 기전제를 두고, 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의 수도제 2과에 공무제 1계, 공무제 2계와 기전제를 두고, 기타 구의 수도제 2과에 공무제 1계와 공무제 2계를 두며, 각계장은 지방 토목기사로 보한다. 다만, 기전제장은 지방기제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제 17조 제 2항의 제 1호중 가·바 및 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수기의 신설 및 교체(기전제를 두는 구의 「교체업무」는 기전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바. 소배수지(저수조)의 운영관리
(공무제 1계, 공무제 2계에 한한다)

아. 가압펌프장·특수가압시설·시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기전제를 두지 아니하는 구의 공무제 1계, 공무제 2계에 한한다)

제 17조 제 2항 제 2호중 다 및 마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배수지(저수조)의 운영관리
마. 가압펌프장·특수가압시설·시설수

도 및 심정호의 관리(기전제를 두는 구에서는 기전제의 분장사무
도 한다.)

제 17조 제 2항 중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전제

가. 양수기의 수급관리 및 교체업무

나. 가압펌프장의 신설·개량 및 유지관리

다. 특수가압시설·시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

라. 기전설비의 설계 및 사용감독

마. 기전설비의 개량·보수 및 유지관리

바. 전력수급계획 및 전기 사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5월 31일

⑥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0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 규
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제 9 조 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토목과에 관리계, 토목계와 하수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토목계장과 하수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p>	<p>정한다.</p>
<p>제 9 조 제 2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 관리계</p>
<p>3. 하수계</p>	<p>가. 수도행정의 종합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p>
<p>가. 하수도 및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 및 집행</p>	<p>나. 청중단속 및 당직(별도 출</p>
<p>나. 하수도 및 하천시설의 유지 관리</p>	<p>사에 한한다)</p>
<p>다.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p>	<p>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소속공무원의 급여, 후생 및 고용원 (임시직을 포함한다)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p>
<p>라. 하수도 및 하천대장의 작성 및 관리</p>	<p>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차량의 유지관리</p>
<p>마. 침수지역 및 수방의 대책</p>	<p>마.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조성의 총괄</p>
<p>바. 유수지펌프장의 운영관리</p>	<p>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의 수납</p>
<p>사. 공공용지 절용·사용 및 처분 의 험의</p>	<p>사. 급수조례 위반자 처분</p>
<p>제 10 조를 제 11 조로 하고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아. 수도사업특별회계 통화재산서의 수불, 보관 및 남부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p>
<p>제 10 조(수도과) ① 수도과에 관리계, 과장 제 1 계, 과장 제 2 계와 공무계를 두고 관리계장, 과장 제 1 계장, 과장 제 2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무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p>	<p>가. 상수도 시공업의 영업허가 및 상수도 시공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② 수도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장 제 1 계와 과장 제 2 계의 분장사무는 구역별로 분장하되 그 분담구역은 과장이 지</p>	<p>카.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과장 제 1 계, 과장 제 2 계</p>	
<p>가. 급수사용료의 조정계획 및 통계</p>	
<p>나. 수도전과 관리 및 양수기 점검</p>	
<p>다. 급수 사용량의 점검</p>	

26-18 제 660호 시

보 1978.5.31

<p>라. 금수조례 위반자의 처벌보고 및 가산금의 과정 마. 금수증지, 폐전과 사후관리 및 동해제 바. 공설공용 수전의 관리 사.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수입금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 자.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의 수납소인 및 수납부 관리 차.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과금의 교부 및 청구 카. 수도사업특별회계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처리 타. 금수사용료 관계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p> <p>3. 공무계 가. 양수기의 신설 및 교체 나. 소화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다. 유수보수 및 유수탐지 타. 조례, 규칙, 위반 금수공사의 단속 마. 배. 금수시설 및 금수장치의 신설, 개량과 유지관리 바. 소배수지(저수조) 및 가압펌프장의 운영관리 사. 금수조정 및 특별금수에 관한 사항</p>	<p>아. 특수가압시설, 사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 자. 금수에 관한 민원처리 차. 각종 금수업무의 통계</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1978년 5월 31일</p> <p>⑥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1 호</p> <p>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 규칙</p> <p>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 제1항중 「전력계」를 「전력 1계, 전력 2계」로 하고, 동조항 중 「전력계장」을 「전력 1계장, 전력 2계장」으로 한다.</p> <p>제9조 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전력 1계, 전력 2계의 부장사무는 지역별로 분담하되 그 분담 지역은 본부장이 정한다.</p>
---	--

<p>제 9조 제 2 항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권역 1 제, 권역 2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송배전시설 및 조영, 환기, 낭만방 기타 부대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나. 전선로의 계획,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 관리 다.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 및 관리 라. 소관시설 사고의 방지, 조사 및 배상 마. 소관시설물의 검사, 수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제 9조 제 2 항 제 4 호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바. 전파관리법규 운영에 관한사항</p>	<p>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2조(부부조직 및 사무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소에 서무계, 경비 1 계와 경비 2 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경비 1 계장과 경비 2 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 사업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p>1. 서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운영 계획 및 실사분석 나. 문서, 관인, 보안 다.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라. 청중단속 및 당직 마. 직무교육 바. 예산, 회계, 조달 사. 금전 및 유통증권의 출납보관 아. 차량정비수수료 조정, 정수 및 보고 자. 도서, 비품 및 차량유지관리 차. 용도품 및 비품구매발의 및 영수 카. 공사 및 구입품점수 및 일회 타. 불용품 및 폐품의 처분 파. 기타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경비 1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차량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및 부품 수급계획 나. 정비용 부품(직접제조) 구매 발의 및 정수
<p>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1978년 5월 31일</p> <p>◎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2호</p> <p>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 규칙</p>	<p>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1978년 5월 31일</p> <p>◎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2호</p> <p>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 규칙</p>

26-20 제 660 호 시

보 1978.5.31

다. 부품 및 자재보관, 출납, 결산
라. 정비용 고정자산 취득관리
마. 물용품 및 폐품의 결정

3. 정비 2 계

가. 차량정비 지도감독
나. 정비요원 기술훈련
다. 정비용 공기구 및 자재(간접
재료) 구매 발의 및 점수
라. 정비차량의 정기점검
마. 전사대행
바. 기타 자동차정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3 호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사무분장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이하 '사업
소'라 한다)의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관리과) ① 관리과에 관리계
와 동물계를 두고 관리계장을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동물계장은 3급을
류인 지방수의관 또는 지방축산기
좌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문서, 관인판수, 보안 및 청
사관리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기본운영 계획
라.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마. 자문위원회 운영
바. 기타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물계

가. 동물원 시설계획
나. 동물수용계획
다. 동물의 사육 및 방역관리
라. 동물원 운영 및 관리

제 3 조(공사과) ① 공사과에 기획
계, 공사 1계와 공사 2계를 두고
기획계장을 지방농림기좌로, 공사 1
계장은 지방토목기좌 및 지방건축
기좌로, 공사 2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및 지방전기기좌로 보한다.

② 공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제 660 호 시

보 - 1978.5.31 ~ 26-21

1. 기획계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8년 5월 31 일
가. 조경·수목식재공사의 계획 나. 조경·수목식재공사의 설계·시 공 및 감독 다. 수목보호 및 관리 라. 기타 평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4 호
2. 공사 1 계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
가. 토목·건축공사의 계획 나. 토목·건축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다. 토목·건축공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서울특별시 건설사업소 사무분장규 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사 2 계	제 2조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 사업소에 관리계·공사계와 가로 통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 사로, 공사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개 로통계장은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② 사업소의 계열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 계 가. 문서·관인판수·보안 및 청사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6-22 제 660호 시

보 1978.5.31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라. 공사용 장비의 정비 마. 공사용 자재의 수급 관리 및 보관 바. 기타 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을 이에 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5월 31일
2. 공사계 가. 소규모도로 포장 나. 굴착도로의 포장복구 다. 파손 포장면의 보수 라. 간선도로면의 시설물 개수 마. 현장공사용 장비의 유지관리 바. 도로순찰 사. 인부의 배치 및 작업감독 3. 가로등계 가. 가로등보수 및 유지관리 나. 소규모 가로등의 설치 다. 지하도 전기시설물의 보수 제 3조를 삭제하고 제 4조를 제 3조 로 한다.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5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사업소 사무분장규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 사업소에 관리계, 생산계와 장비 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로, 생산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장비 계장은 지방기계기사 및 지방전기기 사로 보한다. ② 사업소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문서, 관인판수, 보안 및 청사 관리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라. 공사용자재의 수급 및 보관 마. 기타 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생산자</p> <p>가. 생산물 관리</p> <p>나. 물체 및 아스콘 생산계획 및 생산</p> <p>다. 현장공사용 장비의 유지관리</p>	<p>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2조(하부조직 및 사무분장)</p> <p>(1) 사업소에 등록 1개, 등록 2개 및 검사계를 두고, 등록 1개장 및 등록 2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검사객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p>
<p>3. 장비계</p> <p>가. 생산장비구입 및 설치계획</p> <p>나. 생산장비 보수관리</p> <p>다. 전기설비 및 각종 기계유지 관리</p>	<p>(2) 사업소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등록 1개</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p> <p>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가. 인사, 문서, 보안 및 청사관리</p> <p>나.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p> <p>다.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말소 및 압류</p> <p>라. 자동차 제증명 발급</p> <p>마. 기타 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1978년 5월 31일</p>	<p>2. 등록 2개</p> <p>가.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에 관한 사항</p> <p>나. 자동차등록이전(전출 및 전입)에 관한 사항</p> <p>다. 자동차 임시운행에 관한 사항</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6 호</p> <p>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3. 검사계</p> <p>가. 자동차검사(신규, 재속, 임시, 타분할, 예비)에 관한 사항</p> <p>나. 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p> <p>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정비 기록</p>

26-24 제 660호 시

보 1978.5.31

부 정리

라. 원동기 및 차대 체작자에 관한
사항

마. 기관재 사용 등 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인]

1978년 5월 3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57호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방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중 "영등포소방서"
난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소방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서별	명 칭	위 칙	관 할 구 역
영 등 포 소 방 서	영등포소방관 영등포구 영등포 파 출 소 동 4가 100	영등포구 중	영등포동, 영등포동 1가, 영등포동 2가, 영등포 3가, 영등포동 4가, 영 등포동 5가, 영등포동 6가, 영등포동 7가, 영등포동 8가, 문래동 1가, 문 래동 2가, 문래동 3가, 문래동 4가, 문래동 5가, 문래동 6가, 도림동, 신 길동

제660호 시 보 1978.5.31 26-25

서별	명 칭	위 치	분 할 구 역
영 등	당산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9	영등포구중 당산동 1가, 당산동 2가, 당산동 3가, 당산동 4가, 당산동 5가, 당산동 6가, 양평동 1가, 양평동 2가, 양평동 3가, 양평동 4가, 양평동 5가, 양평동 6가
	노량진소방관 파출소	관악구 노량진동 153-8	관악구중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상도동, 상 도 1동
포 화	구로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구로동 409-1	영등포구중 신도림동, 구로동 (구로 3동 170 번지 3호 254 번지 283 번지 제외)
	화곡소방관 파 출 소	강서구 화곡동 24-61	강서구중 염창동, 육동, 등촌동, 화곡동, 신월동
방	시흥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둑산동 170-1	영등포구중 뚝산동 (뚝산동 117 번지 - 138 번지 외 9호, 둑산동 632 번지 외 35 까지 제 외), 시흥동
서	사당소방관 파 출 소	관악구 사당동 733-1	관악구중 사당동, 동작동, 방배동

26-26 제 660호

시

보

1978.5.31

서번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약
영	오류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궁동 213-20	영등포구중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은동, 천왕동 강서구중 신정동
등	신림소방관 파 출 소	관악구 신림동 230부 턱의 1	관악구중 신림동, 신대방동, 대방동
포	공단소방관 출장소	영등포구 구로동 188-5 독산동 117-5	영등포구중 가리봉동, 구로 3동 170번지 3호, 254번지, 283번지, 독산동 117번지 138번지의 9호, 독산동 632번지-8번지의 35까지
방	봉천소방관 파 출 소	관악구 봉천동 38-1	관악구중 봉천동
서	여의도소방관 파 출 소	영등포구 여의도 동 1-841	영등포구중 여의도동
	공항소방관 파 출 소	강서구 내발산동 407-1가호	강서구중 마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 과례동, 오동, 오체동